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51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1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(안 부칙 제6905호 제2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‘남북협력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한시기구의 현황과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행정기구·정원규정’)에 따르면,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8조 제1항)¹⁾.
 -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,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(최장 6년)할 수 있음(제8조 제4항·5항)²⁾.
-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‘남북협력추진단’과 ‘문화시설추진단’을 운영하고 있음.

1)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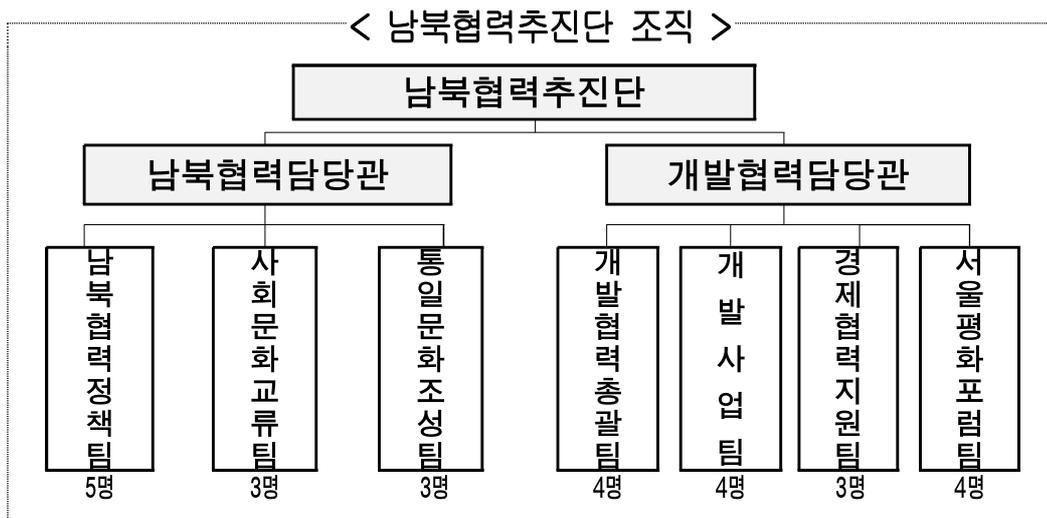
2)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<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>

부서명	존속기한	주요업무
남북협력추진단 (3급)	'20.11.1 ~ '21.10.31(1년) ※ 최초신설 : '18.11.1	·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, 통일기반 조성
문화시설추진단 (3급)	'21.8.19 ~ '22.8.18(1년) ※ 최초신설 : '16.8.19	·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·박물관 건립 및 진흥

- 2018년 11월 신설된 ‘남북협력추진단’ 은 1단·2담당관·7팀(총 29명)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▶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·조정, ▶ 체육·문화·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, ▶ 평화·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, ▶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·관리, ▶ 서울평화포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

- 그동안 ‘남북협력추진단’ 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왔으며, 오는 10월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.

- 「행정기구·정원규정」에 따르면, 시·도에서 3급 이상의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(제21조)³⁾,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기구의 적정성, 성과목표 달성도,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.
- 지난 7월 22일,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「한시·임시기구 정비 계획」(2020.3) 이행을 전제로 존속기한 1년 연장(3차)을 조건부 승인 하였음.
- 「한시·임시기구 정비계획」은 한시기구의 정규화 방안⁴⁾과 시장방침 으로 운영되는 법외기구(임시기구)에 대한 정비 방안⁵⁾을 포함하고 있음.

< 서울시 법외기구 운영 현황 >

부서명	설치근거 (설치일자)	주요업무	비고
국제협력관	시장방침 (2013.12.02)	국제교류·협력 총괄·조정,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 등	조기폐지 (2021.7.19.)
환경에너지기획관	시장방침 (2011.11.29.)	대기질 개선, 기후위기 대응 등 기후환경본부장 보좌	
균형발전기획관	시장방침 (2012.09.28.)	균형발전, 주거환경사업 등 균형발전본부장 보좌	명칭변경 (←재생정책기획관)
주택공급기획관	시장방침 (2011.11.29.)	주택공급 관리, 재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실장 보좌	명칭변경 (← 주택기획관)

3) 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임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4) 한시기구는 관련성 있는 타 실·국의 산하 부서로 재편해 연차적으로 정규기구화한다는 계획임 (지역발전본부 2021년, 문화시설추진단2022년, 남북협력추진단 2023년).

5) 법외기구 중 국제협력관은 폐지하고(2023년), 그 밖에 기구는 연차별로 한시기구화한다는 계획임 (재생정책기획관 2021년, 주택기획관 2022년, 환경에너지기획관 2023년).

다.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

- 올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1년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.
-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 재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.
- 남북의 정치·군사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,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.
-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·문화·경제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유연하게 시행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.
- 최근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시행 2021.3.9.)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또한, 통일부는 「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을 행정예고(2021.8.23.)하면서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됨.
- 서울시는 서울-평양 간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 조성 및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담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정치성을 배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, 그 성과를 공유·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‘남북협력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,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함.

- 한편,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하고 있는 가운데,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을 의결한 ‘자치단체 한시조직 직급채용 협의 권한’ (2019.8.23.)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조직권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이양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혜미	02-2180-8057